

#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시재정 여건 및 기금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기금의 출연기간 및 연도별 출연 금액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기금의 용도에 주차장 조성비를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가. 도시정비기금의 출연기간을 201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총 500억원을 출연하되 매년 30억원 이상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조제2항).

나. 기금의 용도에 주차장 조성비를 추가하여 규정함(안 제3조제1항).

##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관계법령발췌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 및 제2항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07. 10. 19. ~ 2007. 11. 8.(20일)

##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13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총 500억원을 출연하되 매년 30억원 이상 출연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500평 미만의 쌈지공원·소규모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 사업에”를 “1,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”로 한다.

제12조와 제14조제2항 중 “안산시재무회계규칙”을 “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도 시 과
입	실과장 직위·성명	도 시 과 장 이 태 석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정비담당 안 철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안 철 (행정 2381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재원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의 출연금</p> <p>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</p> <p>3. 기타 수익금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에서 총 500억원을 매년 100억원씩 출연한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재원) ①----- -----</p> <p>1. -----</p> <p>2. -----</p> <p>3. -----</p> <p>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13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총 500억원을 출연하되 매년 30억원 이상 출연한다.</p>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·500평미만의 쌈지공원·소규모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 사업에 사용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①----- -----</p> <p>1,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회계관리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(회계관리) -----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-----</p>
<p>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p>	<p>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-----</p>

#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644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12. 12.

제안자 : 도시건설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안산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기금확보를 현실성있게 하기 위해 출연금 총액과 연 출연금을 조정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출연금 총액과 연 출연금을 조정함(안 제2조).

#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총 500억원”을 “총 308억원”으로 하고, “30억원 이상”을  
“30억원을”으로 한다.

# 조 문 대 비 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기금의 재원) ① (생략)            1.~3. (생략)         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13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총 500억원을 출연하되 매년 30억원 이상 출연한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재원) ① (원안과 같음)            1.~3. (원안과 같음)            ②.....            .....총 308억원.....            .....30억원을.....</p>